

제438회 국회
(임시회)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4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상정된 안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1

(10시50분 개의)

○소위원장 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산회 직후 바로 전체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려고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10시52분)

○소위원장 천준호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에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한 1인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일은 10월 2일인데 시행 전에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당 개정안에 있어서는 시행일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2일 시행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개 각각 공히 시행일을 10월 2일에서 공포한 날로 앞당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회법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상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재송부 요청 규정에서 다시 인사청문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 절차 조항에서는 국회법의 인사청문 대상자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법적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쪽, 국회법은 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4쪽의 수정의견, 부칙에서 시행일만 공포한 날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그렇게 대상자를 똑같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해서 인용을 해 주면 앞으로는 매번 인사청문 대상자를 추가할 때 그 본법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3개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과 국회법만 개정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다음 쪽에서는 약칭함에 따라서 다 같이 변경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 8페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행일을 10월 2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페이지는 현재 인사청문 대상을 적시해 놨습니다만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고 나머지 개별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하고 또 공소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소청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공소청법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이미 인사청문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가 없겠습니

다.

○김미애 위원 공소청법의 부칙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김한규 위원 뭘 말씀이십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공소청장과 검찰총장……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본칙입니다.

○김미애 위원 본칙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예.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고 나머지 지역 공소청장들은 별도로 공소청장이라고 하는데 전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헌법에 근거가 있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저희가 법안을 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검찰총장을 못 없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천준호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천준호 예,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인사청문회법에서 이번에 수정을 하시면서 기존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 종합토지세가 2005년도에 중부세가 도입되면서 사실 폐지된 세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물론 실무적으로는 현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국세·지방세 납부내역이 다 제출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이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당연히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그리고 보좌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미애 김민전 김승수 김준형 김한규 문금주 박정현 이주희 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관 장석립